

중유(重油)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갑순* · 윤성만**

〈요 약〉

현행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연료용과 원료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중유는 선박 및 기계류의 연료로 사용되지만 원유와 같이 추가적인 석유정제 공정을 거쳐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의 다른 석유제품으로 생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유에 대한 소비세제를 OECD와 EU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담세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석유정제사업자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 특정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을 하는 소비자가 담세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그 물품이나 행위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의 성격이다. 그러나 연료로서 사용되어 추가가공 후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되는 중유는 결국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산업의 기초 원재료가 되는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물가상승으로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류 중 유일하게 중유는 연료용(수송용과 난방용)과 원료용(석유정제 또는 타산업의 원료용)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결국,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타 산업에 사용되는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의 원가로 구성되어 해당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수입 석유류와 국내 생산 석유류간 조세형평성과 산업간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국내에서 정제되어 생산되는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비과세되지만 환급이 되지 않아 결국 국내 생산 석유류는 과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현행 조건부면세에서도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면세가 되지만,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중유는 과세되어 조세형평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 개별소비세 과세 취지와는 달리,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중유는 타 석유류나 연료용 중유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반 공공발전시설, 석유제품산업 및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kks@dongguk.edu, 주저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ysm6123@seoultech.ac.kr, 교신저자

제철제강업의 배출량보다 낮으며, 연료용 중유에 비하면 원료용 중유의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용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건부면세에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중유, 개별소비세, 원료용, 외부효과, 과세형평성

I. 서 론

에너지원 중 석유류가 소비될 때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및 교통 혼잡 등의 외부효과(externality)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에너지 소비를 제한하고 경제적 비용을 높이는 피구세 및 교정세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왔다(김승래과 전병목 2011). 그래서 지금까지 석유류에 대한 소비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송용 내지 연료용 석유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박용덕과 마용선 2007; 김형건과 박용덕 2008; 김지용 2009; 김태현 2014; 김형건 2018).

그러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동일한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별 차별과세를 일으키는 특정산업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 현행 세법에서는 중유를 연료용과 원료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조건부면세로서 일부 원료용 중유를 면세하고 있다. 즉 중유 관련 개별소비세율은 리터당 17원, 이에 부가세 형태로 교육세는 리터당 2.55원(개별소비세의 15%)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조건부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수입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은 개별소비세 비과세혜택을 적용받는 반면, 수입중유로 정제공정을 통해 생산된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은 기과세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않아 차별 과세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과 주변국의 중유 과세체계를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중유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입 중유를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석유정제산업의 역차별성을 해결하여 중유 과세체계를 합리화시키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개별소비세의 이론적 근거, 과세목적 및 과세원칙을 검토하고, 중유 과세체계의 국제적 비교, 주요국 및 주변 경쟁국의 중유에 대한 과세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현행 국내 중유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개별소비세의 이론적 근거와 과세목적 및 과세원칙 검토하고자 한다. 최적조세이론에 따르면 가격탄력성이 낮은 품목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탄력성이 높은 품목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시사하고 있지만, 개별소비세 등을 비롯한 소비세제가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는

과세기반이 상대적으로 좁은 전형적인 간접세 형태로서 부가가치세와 같이 과세기반이 넓은 일반소비세와 대비되며 소비억제, 외부불경제의 교정, 누진성의 강화, 응익과세원칙의 구현 및 세수확보와 같은 과세목적 내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중유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한 국제적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64개국 중 25개국이 중유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세대상 중유는 연료용 중유를 의미한다. 또한 36개의 OECD회원국 중 52.8%인 19개 국가, EU회원국 28개 국가 중 67.9%인 19개 국가가 중유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정제능력(refinery capacities) 수준이 낮은 나라들이 중유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제능력 수준이 높은 미국, 러시아, 인도 및 일본은 중유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가 없다. 결국 별도의 중유 과세체계를 갖춘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정제능력 수준이 낮으며, 더구나 원료용 중유가 아닌 연료용 중유에 과세를 하고 있어, 국내 석유정제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원료용 중유에 대하여 면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주요국의 중유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주요국의 중유 과세체계 분석으로서 미국, EU(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유 과세체계를 분석한다. 현재 미국은 중유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는 없으나 독일, 프랑스 및 영국 등 EU국가들 대부분은 중유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주변 경쟁국의 중유 과세체계 분석으로서 중국, 싱가포르, 대만 및 인도를 분석한다.

넷째, 현행 국내 중유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행 국내 중유 과세체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담세자 측면(최종소비자가 아닌 석유정제사업자)에서 원료용 중유의 담세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석유정제사업자가 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의 성격 측면(원료용 중유에 대한 과세) 국제적 비교분석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료용 중유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수입 재화와 생산 재화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는 수입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은 원유와 함께 비과세하고 있으나, 수입 중유를 정제하여 생산한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은 원재료인 중유에 기과세하였던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않아 과세되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개별소비세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최적조세이론과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개별소비세 연혁과 현행 제도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석유류 중 중유에 대한 과세체계를 OECD회원국을 대상 국제적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석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제Ⅳ장에서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중유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중유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소비세 개정안을 제시하고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II. 개별소비세의 이론적 배경 및 석유류에 대한 소비세제 검토

1. 개별소비세의 이론적 배경

가. 최적조세이론

조세론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최적조세이론 중 하나가 Ramsey의 역탄력성의 원칙(inverse elasticity principle)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조세 부과에 따른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의 세율을 수요가격탄력성의 역수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이 이론은 가격탄력성이 낮은 품목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탄력성이 높은 품목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조세부과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행태가 많이 영향을 받을수록 효율성(efficiency)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상충관계, 조세저항, 외부불경제 또는 외부경제 등과 같은 외부효과의 존재 등으로 인해 Ramsey rule이 제대로 준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즉, 사치세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중시되었던 종전의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상당수 과세대상의 수요탄력성이 큰 품목에 높은 세율이 부과되어 효율성 측면에서의 최적조세와는 괴리가 있다. 최근에는 외부불경제의 내재화를 통한 개별소비세의 외부불경제 축소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구세 또한 Ramsey rule과 다른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 관련 연구의 검토

최적조세이론 관점에서 개별소비세 등을 비롯한 소비세제가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¹⁾ 먼저, Atkinson and Stiglitz(1976)는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모두 동일하고 상품소비와 여가의 소비가 분리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소비세제가 최적의 누진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정 상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전체적인 사회후생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Mirrlees(1976)는 높은 기술수준을 갖고 있는 고소득 계층이 선호하는 상품에 대한 과세는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Christiansen(1984)은 여가와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들은 과세되어야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Atkinson and Stiglitz(1976)와 같이, 이들은 동일한 소득수준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모두 동일한 소비행위를 한다는 기본적인 가정하에 논의를 하고 있다. 또한 Cremer et al.(2001)은 소비자의 기초자산의 차이에

1) 이러한 최적조세이론은 석유류에 대한 소비세제가 사회후생을 증가시키거나 교정과세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호체계의 이질성을 고려하면 상품과세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Saez(2012)는 보다 일반화된 조건하에서 고소득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호하는 상품이나 여가의 증가와 함께 소비가 증가하는 상품들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Atkinson and Stiglitz(1976)가 가정한 조건들을 완화하여 소비자들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선호체계도 다르고 여가시간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Kaplow(2006)은 Saez(2012)와는 달리, 차별적 상품과세는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주장과 함께 상황에 따라 현재의 차별적 상품과세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의 개편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Lee(2011)는 완전 고용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키는 역학을 상품과세가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실업수당 등 복지제도가 발달한 국가들에게 높은 직접세 부담뿐만 아니라 높은 소비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관대한 복지제도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최적조세이론은 정책방향의 설정에 유용하지만 정치과정 및 경제상황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한 여러 요인들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별적 상품과세가 소득과세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석유류에 대한 소비세제 검토

가. 연혁²⁾

석유류에 대한 과세는 종전 물품세법에 근거하였으나 1961.12.8. 석유류세법이 제정되어 석유류에 한정된 소비세제가 도입되었다. 석유류에 대한 소비세는 물품세법에서 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세율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과세방식에 있어서도 타물품과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세의 철저와 조세체계의 정비를 기하고자 이 법을 물품세법에서 분리하여 제정하게 되었다. 이때, 휘발유의 세율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고 중유 기타의 유류의 세율을 인하하고 항공용 휘발유는 비과세로 하였다. 종전부터 시행하던 KOSCO³⁾ 판매과세제와 대리점 판매과세제를 채택하고 과세되지 아니한 석유류의 판매자나 소지자에게 과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정 당시 중유는 물품가격의 10%이며 휘발유 300%, 등유 20%, 경유 20% 및 기타 석유류 10%의 세율로 과세하게 되었다. 다만, 면세대상으로 외교공관용 석유류가 있었다.

1964.7.8.에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면세규정을 도입하였다. 휘발유 세율을 인하하고 기타 유류에 대하여는 면세를 함으로써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 수출 또는 원료면

2) 본 연구의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연혁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연혁정보를 활용하였다.

3) 당시 국내의 석유류 공급은 외국법인인 대한석유저장회사(KOSCO)가 독점하고 있었다.

세제도를 신설하며 특수용도 면세규정을 확충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1964.12.31.까지 잠정적으로 휘발유의 세율을 100%로 인하하고 등유, 경유, 중유 및 기타 유류는 면세가 적용되었는데, 이 면세의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였다. 즉 수출 및 특수용도면세 그리고 원료 면세로 확대되었다.

1964.12.31.에는 휘발유 세율이 인하되는 동시에 등유 면세 및 경유·중유에 대한 세율은 인상되었다. 각종 유류에 대한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소비자부담의 공평을 기하고 아울러 정유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석유류의 세율을 휘발유는 100%로 하고, 등유는 면세하며, 경유는 40%로, 중유는 20%로, 기타 유류는 10%로 조정되었다.

1967.11.29. 등유와 병커C유의 면세 철폐 및 유류간 가격균형을 위한 개정되었는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상의 내자조달을 지원하고 유류간의 가격균형을 기하기 위하여 등유와 병커C유에 대한 면세를 철폐하고 이에 과세하기로 하되 그 세율은 일반산업의 기업활동을 교란하거나 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때, 등유 30%, 병커C유 5%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의료용에 사용하는 석유류 및 의약품제조용 원료, 비료제조용 원료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와 같은 특수용도 면세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1967.3.7.에 경제개발계획상 최우선적으로 확충시켜야 할 사회간접자본인 도로건설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100%에서 200%로 인상하였다. 또한 1970.1.1.에는 국내 가용자원인 석탄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나아가서 석탄산업육성자금의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과의 대체도가 가장 높은 병커C유에 대한 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하였다.

1974.12.21.에는 등유를 비과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한 세율을 법제화하는 한편, 등유를 비과세품으로 하여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연료정책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였다. 1·14긴급조치에 의한 휘발유세율을 300%로 법제화하고 등유를 비과세품으로 전환하며, 제조를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석유류는 반출된 것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1977.7.1.에 석유류세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근거하여 석유류에 대해 과세하였다. 제4차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세제를 더욱 근대화하기 위하여 간접세제의 전면적 개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였다. 이때, 과세대상은 과세물품과 과세장소로 대별하여 사치성물품 및 행위와 소비억제물품·내구소비재 등 최종소비재로 하였고, 세율은 종전의 소비세법상의 세율을 기준으로 하되, 그 구조를 단순화하는 한편, 법정세율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소비세제가 도입되면서 휘발유와 경유에 한정하여 과세하였으나 1982.12.21.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까지 확대가 되었다. 제4종 제2류 휘발유 물품가격의 160%, 경유 물품가격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고, 1982.12.21.에 휘발유 물품가격의 100%로 세율 인하하면서 액화석유가스로 확대하여 물품가격의 10% 세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제18조(조건부면세)에서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의료용·의약품 제조용·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였다.

1978.12.5. 조건부면세 범위를 석유화학나프타분해공업 원료인 석유로 확대되었는데, 조건부면세 범위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의료용·의약품 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나프타분해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이었다.

1993.12.31.에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을 다시 인상하면서 등유와 천연가스로 과세를 확대하였다.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물품가격의 150%, 경유 물품가격의 20%로 세율을 인상하였고, 등유 물품가격의 10%,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물품가격의 10% 세율을 적용하였다. 이때, 조건부면세에 기존 석유화학나프타분해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서 석유화학공업 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명칭을 개정하였다.

한편, 1995.12.29.에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였다. 지나친 간접세부담으로 인한 자원배분왜곡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의 단계별 세율격차를 완화하고, 휘발유와 경유에 과세되는 교통세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유류에 대한 과세방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등유·석유가스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종량세로 전환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별소비세의 단계별 세율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10%·15%·25%로 되어 있는 특별소비세의 기본세율체계를 10%·15%·20%로 조정하였다. 또한 종전 세수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종량으로 역산하여 휘발유(유사 대체유류 포함) 리터당 345원, 경유 리터당 48원, 등유 리터당 25원, 석유가스(액화한 것 포함) 킬로그램당 18원,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킬로그램당 14원이었다.

1998.1.8. 에너지 소비절약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류 등 일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유의 세율을 리터당 25원에서 60원으로, 석유가스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18원에서 40원으로, 천연가스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14원에서 4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따라서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5원, 경유 리터당 48원, 등유 리터당 60원,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킬로그램당 40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킬로그램당 40원이었다.

1999.12.3.에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였다.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691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60원, 등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60원,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천연가스(액화한 것

을 포함)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이었다.

2000.12.29.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하여 경유·등유 및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중유 및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되, 그 세율은 경유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즉, 2007.7.1.부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630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460원,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231원,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20원,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704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69원이었다. 또한 2001.7.1.~2006.6.30.의 유류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하게 되었다.

2005.7.8.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와 석유가스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각각 휘발유 대비 현행 70%와 53%에서 85%와 50%에 이르도록 인상 또는 인하하되,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2005년 7월부터 인하하였다. 즉,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454원,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201원,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7원,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360원,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47원이었다. 이와 함께, 2005.7.1.~2007.6.30.의 유류세율 적용의 특례를 제정하여 점진적인 인상 기초를 설정하였다.

2005.12.31.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에 비하여 높으므로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원 인하하고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은 킬로그램당 20원 인상함으로써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등유와 천연가스의 세부담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07.12.30. 특별소비세법에서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하였고,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에 비하여 높으므로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원 인하하고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은 킬로그램당 20원 인상함으로써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등유와 천연가스의 세부담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

나. 현행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중유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에서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리터당 17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세를 100분의 15를 과세(2.55원)하고 있어 결국, 현행 세법상 중유에 대하여는 총 리터당 19.55원이 과세된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10호에 따라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조건부면세를 하고 있다. 결국 중유를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과세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연료용과 원료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즉 조건부면세가 아닌 경우 연료용과 원료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세하는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중유는 선박 및 기계류의 연료로 사용되지만 원유와 같이 추가적인 석유정제 공정을 거쳐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의 다른 석유제품으로 생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료용 중유를 중심으로 현행 개별소비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중유 과세체계에 대한 국제적 비교분석

1. 중유 과세체계에 대한 국제적 비교

가. OECD의 Database on Policy Instruments for the Environment 자료 분석

석유류 중 중유에 대한 과세체계를 국제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유종별 세제로 구분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및 가스류로 구분되어 있는 국가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휘발유, 경유 및 가스류 등 유종별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휘발유, 경유 및 가스류에 대한 유종별 세제는 존재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중유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를 갖춘 국가들을 위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OECD의 Database on Policy Instruments for the Environment의 자료에 의하면 OECD회원국과 비회원국 64개 국가 중 39.1%인 25개 국가가 중유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다. 36개의 OECD회원국 중 52.8%인 19개 국가, EU회원국 28개 국가 중 67.9%인 19개 국가가 중유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EU의 에너지세 지침(EU Energy Tax Directive)에 따라 석유정제 및 전해공정 등 산업공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

OECD 또는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중유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Albania, Brazil 및 Montenegro 등 3개국이다.

〈표 1〉 중유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를 갖춘 국가 현황 (25개국)

구 분	OECD회원 여부	EU회원국 여부	중유에 대한 세목
Korea	○		개별소비세, 교육세
Albania			소비세
Austria	○	○	석유세
Brazil			석유가스세
Bulgaria		○	소비세
Canada	○		탄소세(컬러비아, 퀘벡)
Cyprus		○	소비세
Czech Republic	○	○	소비세
France	○	○	석유세
Germany	○	○	석유세
Greece	○	○	석유세
Hungary	○	○	에너지세
Iceland	○		탄소세
Ireland	○	○	석유세(탄소함유/비함유)
Italy	○	○	소비세
Latvia	○	○	소비세
Lithuania	○	○	석유세, 대기오염세
Luxembourg	○	○	소비세
Montenegro			석유세
Netherlands	○	○	소비세
Poland	○	○	소비세
Romania		○	소비세
Slovenia	○	○	소비세, 탄소세
Sweden	○	○	석유세
United Kingdom	○	○	석유세
	19개국	19개국	

출처 : OECD Database on Policy Instruments for the Environment

중유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를 갖춘 25개 국가 중 12개 국가가 소비세 세목으로 과세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네덜란드,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및 루마니아 등 12개 국가에서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고 석유세로 과세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및 브라질 등 10개 국가가 석유세 등 자원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헝가리,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및 슬로베니아 등 5개 국가가 환경세 또는 탄소세 형태로 중유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표 2〉 중유에 대한 별도 과세국가의 세목 현황

(단위 : 국가 수)

구분	소비세(Excise tax)	석유세(Oil tax)	환경(탄소)세 (Environment/Carbon tax)
국가수	12	10	5*

주1)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가 석유세 또는 소비세와 환경(탄소)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음

출처 : OECD Database on Policy Instruments for the Environment

또한 중유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를 갖춘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 중유를 원료용이 아닌 연료용으로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특정 과세대상을 heavy fuel oil로서 연료용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은 과세대상 중유를 연료용(Heavy oil other than fuel oil, gas oil or kerosene used as fuel)으로 특정화하고 있는데, 차량용과 난방용 연료로 사용되는 중유에만 과세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난방용(heating)과 비난방용으로 연료로 구분하여 중유에 대하여 과세하고, 이탈리아는 산업난방용과 비산업난방용으로 구분하면서 유황함유량 1% 이하/초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차량연료용, 항공연료유 및 개인 선박연료용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폴란드와 슬로베니아는 난방용 중유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중유 대상 과세 체계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연료용과 원료용 등 용도와 상관없이 모든 중유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OECD의 환경정책수단 데이터베이스(DPIE, Database on Policy Instruments for the Environment)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사유를 크게 외교관용(Exemptions for Diplomats), 수출용(Exemptions for Exports), 항공기용(Exemptions for Aviation), 선박용(Exemptions for Navigation), 경제부문(Sector of the Economy) 및 생산활동(Product or Activity)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기타로 구분한 면세사유로는 공공부문용(Exemptions for Public Services), 국가기관용(Parts of the country), 장애인용(Exemptions for Disabled Persons) 및 기타(Other Exemptions)가 있다.

중유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를 갖춘 국가들의 중유에 대한 면세사유 현황에서 항공기용과 선박용 중유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는 국가가 각각 16개 국가로 가장 많으며, 이어 생산활동의 용도에 면세를 적용하는 국가가 14개 국가였다. 국제항행 항공기와 선박의 연료에 사용되는 중

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세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산이나 활동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생산이나 활동에 대한 면세로 독일과 아일랜드는 석유생산이나 생산능력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중유, 프랑스는 동력용이 아닌 원료용 등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중유, 아일랜드는 소비가 아닌 용도(예, 석유정제나 의약품 등 원료용)에 사용되는 중유 그리고 스웨덴은 수송용이나 난방용 연료가 아닌 다른 용도를 사용되는 중유를 면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중유 과세체계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수송용이나 난방용 같은 연료용과 석유정제용 같은 원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표 3〉 면세대상 중유 현황

	외교관용	수출용	항공기용	선박용	경제부문	생산활동	기타
Korea	○	○	○	○	○		
Albania	○	○					○
Austria			○	○	○	○	
Brazil						○	
Bulgaria	○	○	○	○		○	○
Canada			○	○	○	○	○
Cyprus		○					○
Czech Republic			○	○		○	
France			○	○	○	○	
Germany			○	○	○	○	
Hungary						○	
Ireland		○	○	○	○	○	○
Italy	○	○	○	○			○
Latvia	○		○	○			○
Lithuania	○	○	○	○	○	○	○
Luxembourg					○		
Netherlands			○	○	○	○	
Poland						○	
Romania			○	○			○
Slovenia	○	○	○	○		○	
Sweden			○	○	○	○	
United Kingdom	○	○	○	○			
합계	8	9	16	16	10	14	11

주1) 중유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를 갖춘 25개 국가 중 그리스, 아이슬란드 및 몬테네그로는 면세용 중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출처 : OECD Database on Policy Instruments for the Environment

또한 경제부문의 면세사항을 10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특성에 맞도록 면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석유정유사가 자체 석유정제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유류(모터 연료가 아님), 용광로 및 발전용 연료유 내지 LPG를 면세하고 있고, 프랑스는 택시, 대중교통, 화물운송, 농업부문(비수송용)에 대한 부문에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부분적인 면세를 하고 있으며, 독일은 전기효율이 57.5% 미만인 가스터빈, 효율이 70%이상인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용 유류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낚시보트와 농기계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유색연료와 화학적 용도의 경유 그리고 네덜란드는 용광로에 사용되는 유류와 석유류 생산에 사용되는 유류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이 의약품, 의약품 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한해 면세하고 있는 반면, 다수의 국가들은 석유정제용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즉, 독일과 프랑스는 생산활동,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및 스웨덴은 생산활동에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석유정제용 원료에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당초 이러한 원료를 과세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 슬로베니아는 난방용 중유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중유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는 국가와 함께 별도 과세체계를 갖춘 국가인 경우에는 석유정제용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를 과세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거나 설정하더라도 면세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나. EU회원국의 에너지 소비세

European Commission은 석유류를 포함한 에너지소비세(Excise Duty on Energy)를 Energy Tax Directive 2003/96/EC⁴⁾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전기뿐만 아니라 난방 및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 규칙은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세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세율과 구조, 항공기 연료에 대한 특정 규정 및 경유와 등유에 관한 규정(Council Directive 95/60/EC)이다.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세의 세율 및 구조에 대하여 이 규정은 EU회원국의 난방용 연료와 수송용 연료, 전기에너지 제품에 적용해야 하는 최저 소비세율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최저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 연료용은 레저용이 아니면 소비세가 면제가 되는데, 국내선 항공기의 연료도 회원국간 합의에 의해 소비세 과세가 가능하지만 최저 소비세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U의 에너지소비세는 대체로 휘발유, 경유 및 등유, 가스류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유는 난방용 연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소비세 과세대상인 수송용 연료로서 중유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난방용 연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해서만 1천리터당 15유로의 최저 세율을 규정

4) 관련 사이트는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3:283:0051:0070:EN:PDF>

하고 있다. 따라서 난방용 연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석유정제 등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중유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표 4〉 EU의 최저 소비세율

구 분	단 위	수송용 연료	상업/산업용 수송용 연료	난방용 연료 및 전기	
				영업용	비영업용
유연휘발유	Euro per 1000 litres	421	—		
무연휘발유	Euro per 1000 litres	359	—		
경유	Euro per 1000 litres	330	21	21	21
등유	Euro per 1000 litres	330	21	15	15
LPG	Euro per 1000 kilograms	125	41	0	0
천연가스	Euro per gigajoule	2.6	0.3	0	0
석탄류	Euro per gigajoule	—		0.15	0.3
전기	Euro per MWh	—		0.5	1.0

출처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excise-duties-alcohol-tobacco-energy/

IV. 현행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행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문제점

가. 개별소비세의 담세자 측면 : 최종소비자가 아닌 석유정제사업자

현행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 특정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을 하는 소비자가 담세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그 물품이나 행위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의 성격이다.⁵⁾ 모든 재화와 용역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의 성격인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개별소비세법 상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가 제조업자·공급업자(또는 관세를 납부하는 자) 또는 장소 등의 경영자이지만 그 세금은 물품이나 행위 등의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제조업자, 공급업자, 장소 등의 경영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다른 간접세다. 그러나 정제용 중유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담세자가 해당 과세물품의 최종소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비자가 아닌 중간단계의 추가가공 사업자가 된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고급소비물품, 자동차류, 담배류와 석유류 대부분이 최종소비자가 되어 해당 물품의 소비행위를 줄이도록 교정하는 도입 취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소비행위를 줄이도록 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사치성 물품 및 건강유해물질 소비행위의 감소, 환경오염의 저감 등 각기 다를 수 있으나 결국 해당 소비행위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류 중 중유는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소비하기도 하지만 타 산업의 원료로서 사용되어 추가가공 후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되는 성격이다. 수입한 중유는 선박이나 발전 연료, 의료·의약품·비료·농약·석유화학공업용의 원료 및 석유정제용 원료로 사용된다. 결국, 중유의 담세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이 중유를 활용하여 추가가공을 하는 사업자가 된다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표 5〉 개별소비세 담세자의 구분

구 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담세자
고급소비 물품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 및 나석은 제외),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 사용 제품 포함),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용단,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 제외), 고급 가구	제조/반출자	최종소비자
자동차류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cc 이하인 것 제외)와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	제조/반출자, 관세납부의무자	최종소비자
석유류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가스(액화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 혼합한 것 포함),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 혼합한 것 포함), 천연가스(액화 포함),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 유연탄	제조/반출자, 관세납부의무자	최종소비자 (정제사업자 등 원료 사용자)
담배류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	제조/반출자	최종소비자

따라서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최종소비자가 아닌 석유정제 사업자를 담세자가 되는 정제용 원료의 중유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중유에 대한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는 조건부면세가 적용되어 담세자가 추가가공 사업자라는 문

제점이 부분적으로는 해결된다. 그러나 현행 조건부면세제도는 해당 산업의 보호 및 육성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개별소비세 담세자 왜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소비세제 형태로 석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가진 주요국들은 수송용 또는 난방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최종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반면, 석유정제 원료용 석유류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송용 내지 난방용과 같이 소비목적의 석유류는 최종 소비자가 담세자이지만 석유정제 원료용은 최종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중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타 산업과 달리 석유정제사업은 중유를 정제하여 새로운 석유물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조건부면세 대상 산업보다 중유 관련 석유정제산업은 원유와 중유를 정제용 원료로 사용하여 도시가스, 암모니아, 수소,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을 생산한다. 결국,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타 산업에 사용되는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의 원가로 구성되어 해당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의 성격 측면 : 원료용 중유(중간재)에 대한 과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중유는 다양한 용도로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이면서 산업의 기초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즉, 자동차, 비행기, 선박 및 제조 공장 등의 동력으로 사용되며, 제철소, 화력발전소, 시멘트(제지, 그라스)공장 등의 열 발생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합성섬유, 농산물 재배 사용물품(비료, 농약), 스포츠용품, 합성고무, 완구, 합성세제 및 정제공정 등의 원료용으로 사용된다.

〈표 6〉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석유류의 소비성격

구 분	납세의무자	담세자	소비성격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제조/반출자, 관세납부 의무자	최종소비자	연료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최종소비자	연료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최종소비자	연료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최종소비자	연료
		원료사업자	원료
석유가스, 부탄가스, 천연가스		최종소비자	연료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		최종소비자	연료

한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류 중 유일하게 중유는 연료용(수송용과 난방용)과 원료용(석유정제 또는 타산업의 원료용)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모든 재화와 용역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의 성격인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개별소비세법 상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 과세하는 체계다. 그러나 중유는 다른 석유류와는 달리 수송용이나 난방용으로 소비되는 연료 소비성격과 함께 석유정제 또는 타 산업의 최종산물에 사용되는 원료용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타 석유류처럼 연료용으로 소비되는 성격이 아닌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입법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다. 조세중립성의 문제

(1) 수입재화와 국내생산재화간 과세형평성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석유가스,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과정에 발생하는 부산물로서의 석유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비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원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항공유는 동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조건부면세에 해당된다. 그러나 수입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어 수입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이후 환급해 주는 형태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즉, 수입시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었다가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부분에 대해 환급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된 항공유 등은 비과세되며, 수입되었더라도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비과세하게 된다.

이에 반해, 중유로부터 정제되어 생산되는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비과세되지만 환급이 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 중유를 정제하여 항공유 등을 생산하여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부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정제되기 전의 중유 상태에서 과세되었던 개별소비세가 환급되지 않아 결국 중유로부터 국내에서 정제되어 생산된 항공유 등은 비과세되었더라도 그 원가에 과세된 개별소비세가 포함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원유로부터 정제되어 생산된 항공유 등도 중유로부터 정제된 경우와 동일하게 비과세되면서 환급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유는 수입 당시 비과세기 때문에 환급되지 않는다. 중유는 정제 후의 항공유 등에 해당하는 기과세된 개별소비세가 환급되지 않지만 원유의 경우에는 정제 전에 비과세되었기 때문에 환급할 기과세 세액이 없다. 결국, 원유로부터 정제된 항공유 등과 중유로부터 정제된 항공유 등간에 과세형평성 원칙이 위배되는 결과가 된다.

결국, 국내 생산 항공유 등과 수입 항공유 등에 리터당 19.55원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국내 생산 항공유 등의 가격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 특히 국내 원유로부터 생산된 항공유의 경우, 원유 상태로 수입시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결국 수입 항공유 등과 세부담 차이는 발생하지 않으나 중유의 경우에는 중유 상태로 수입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항공유 등으로 생산한 후에도 환급되지 않아 리터당 19.55원의 세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수입 항공유 등과 국내 중유로부터 생산된 항공유 등간의 과세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표 7〉 수입 및 중유로부터 국내 정제된 중유 간 차별과세

구 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국내 생산	중유로부터 정제	리터당 17원	리터당 2.55원
	원유로부터 정제	—	—
수입		—	—

한편, 해외 주요국의 석유류 과세체계를 보더라도 국내 생산 석유류와 수입 석유류에 대한 차별과세는 없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국내 채굴 석유류와 수입 석유류에 과세되는 세목만 다를 뿐 차별화된 과세는 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국내에서 채굴된 석유류에 대하여 자원세를 과세하고 수입 석유류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석유정제용으로 사용된 원유나 중유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자원세와 소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2) 산업간 과세형평성의 문제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0항은 조건부면세로서 석유류를 일부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석유류를 면세하고 있다. 의약품, 의약품 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는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조건부면세를 적용받는 산업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산업으로서 그 지원 타당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석유류를 원료용을 사용하는 석유정제산업에 원료용으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어 역차별 문제가 존재한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석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석유정제산업은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 특히, 유사시를 대비한 비축물자 중 석유류는 가장 중요한 물자로서 이 물자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산업에 조세의 역차별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연료용이 아닌 원료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으로서 석유정제산업은 오히려 조세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의 석유정제능력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2018년 기준 세계점유율 3.3%로 세계 5위수준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세제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1985년 33개국 중 19위였다가 1995년 10위, 2005년 5위, 2010년과 2015년 6위를 차지하다가 다시 2018년에 일본을 제치고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세 역차별이 아닌 오히려 조세지원 수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8〉 석유정제능력 순위 : 세계 상위 10위권 내 국가 현황
(단위 : 천 배럴/일)

구 분	1985	1995	2005	2015	2018	2018년 점유율
전세계	72,620	76,010	87,196	97,650	100,049	100%
미국	15,459	15,333	17,339	18,317	18,762	18.8%
중국	2,348	4,386	8,463	15,024	15,656	15.7%
러시아	7,127	6,117	5,398	6,523	6,596	6.6%
인도	867	1,133	2,558	4,307	4,972	5.0%
한국	751	1,727	2,598	3,128	3,346	3.3%
일본	4,724	5,006	4,531	3,721	3,343	3.3%
사우디아라비아	1,510	1,692	2,102	2,899	2,835	2.8%
브라질	1,435	1,481	1,942	2,281	2,285	2.3%
이란	685	1,315	1,692	1,985	2,225	2.2%
독일	2,198	2,104	2,322	2,050	2,085	2.1%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www.keei.re.kr/)

라.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의 환경오염 측면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주요 과세취지는 석유류 소비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다. 1962년 석유류세로 최초 도입된 이후 1977년 특별소비세에 편입되었으며, 2008년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기존에는 사치세 성격이었으나, 2000년과 2007년에 있었던 제1·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환경세적 특성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현행 석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는 환경오염·교통혼잡 등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표 9〉 석유류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2016년 기준
(단위 : 백톤)

	CO	NOx	SOx	TSP	PM10	PM2.5	BC	VOCs	NH3
휘발유	1,955	229	0.8	10.1	10.1	10.0	0.5	349	0.0
경유	1,445	6,336	17.7	199	199	182	119	373	0.1
등유	18.1	66.3	1.1	1.2	1.1	0.9	0.1	0.9	0.0
중유	134	1,158	649	58.3	57.4	50.2	6.9	42.3	0.0
항공유	88.6	91.0	8.0	1.0	1.0	0.9	0.7	7.5	—

주1) 대기오염물질은 CO(일산화탄소),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 TSP(총미세먼지),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BC(블랙카본), VOC(휘발성유기화합물), NH3(암모니아)로 구성됨

출처 :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서비스(<http://airemiss.nier.go.kr>)

한편, 연료용인 석유류별 연소되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나타낸 <표 9>를 보면, 중유는 황산화물(SOx)이 타 유류에 비해 많이 배출되며 나머지 물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즉, 황산화물(SOx)이 649백톤으로 전체 석유류의 95.9%를 차지하지만 미세먼지인 TSP, PM10 및 PM2.5 전체의 20%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중유는 연소되는 연료용이며, 이는 개별소비세의 석유류 과세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연료용이 아닌 원료용 중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비중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산업 및 시설인 공공발전시설, 석유제품산업, 제철제강업 및 석유정제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나타낸 <표 10>을 보면, 석유정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타 산업이나 시설에 비해 현격하게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및 일산화탄소(CO)가 각각 12,917톤, 7,701톤 및 1,605톤으로 4개 산업 및 시설 전체의 2.89~6.96% 순이며, 나머지 대기오염물질은 2% 미만 수준이다. 따라서 이는 타 산업에 비해 석유정제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석유정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2016년 기준

(단위 : 톤)

구 분	CO	NOx	SOx	TSP	PM10	PM2.5	BC	VOCs	NH3
공공발전시설	35,515	109,721	71,497	3,337	3,194	2,593	151	4,832	708
석유제품산업	12,643	4,932	61,756	502	145	32	0.02	58,686	24,496
제철제강업	5,760	43,352	39,451	7,797	4,856	3,730	11	19,546	1,728
석유정제시설	1,605	7,701	12,917	157	53	23	2	296	177
(비중, %)	(2.89)	(4.65)	(6.96)	(1.33)	(0.64)	(0.36)	(1.22)	(0.36)	(0.65)

주1) 대기오염물질은 CO(일산화탄소),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 TSP(총미세먼지),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BC(블랙카본), VOC(휘발성유기화합물), NH3(암모니아)로 구성됨
출처 :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서비스(<http://airemiss.nier.go.kr>)

특히, 연료용 및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나타낸 <표 11>에서 연료용 중유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부분이다. 즉, 연료용 중유의 대기오염물질이 원료용에 비해 95% 이상이며 특히 미세먼지나 블랙카본(BC), 질소산화물(NOx)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도 96% 이상을 차지한다. 물론 암모니아(NH3)는 원료용이 약 14%를 차지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환경오염 등의 외부불경제로 인한 교정과세로서 역할을 한다고는 볼 때, 연료용으로 소비되는 경우에는 부합하지만 석유정제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중유를 연료용 내지 원료용의 용도구분 없이 일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석유류에 대한 교정과세로서 개별소비세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을 연소를 통해 소비되는 연료용 중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11〉 연료용 및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2016년 기준
(단위 : 톤)

	CO	NOx	SOx	TSP	PM10	PM2.5	BC	VOCs	NH3
석유정제 원료용 (비중, %)	630 (4.48)	2,655 (2.24)	3,086 (4.54)	40 (0.69)	24 (0.42)	9 (0.18)	0 (0.01)	162 (3.69)	101 (13.93)
연료용 (비중, %)	13,442 (95.52)	115,816 (97.76)	64,893 (95.46)	5,832 (99.31)	5,736 (99.58)	5,021 (99.82)	693 (99.99)	4,227 (96.31)	623 (86.07)

주1) 대기오염물질은 CO(일산화탄소),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 TSP(총미세먼지),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BC(블랙카본), VOC(휘발성유기화합물), NH3(암모니아)로 구성됨

주2)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는 산업 및 시설구분에서 “석유정제시설”에 사용되는 중유로 측정하였으며, 연료용 중유는 유종구분에서 “중유”로 구분하여 측정함

출처 :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서비스(<http://airemiss.nier.go.kr>)

2.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개선방안

현행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에서 원료용 중유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제1조의 과세대상에서 직접적으로 원료용 중유를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동법 제1조에서 석유류 유종별 과세대상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대상 중유와 세율에 직접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괄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개정방안은 휘발유, 경유, 등유 및 가스류 중에서 중유에 한정하여 과세 제외시키는 것으로 석유정제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유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제15조 수출 및 군납 면세, 제16조 외교관 면세,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및 제18조 조건부면세에서 석유류라고 총칭한 것과 대치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이 직접적인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만을 과세 제외시키는 방법이긴 하나 다른 조문이나 타 석유류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표 12〉 개별소비세법 제1조의 중유에서 원료용 중유를 제외

구 분	현 행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과세대상과 세율)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 생략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17원 (이하생략)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와 동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정제공정 원료는 제외한다.) : 리터당 17원 (이하생략)

나. 개별소비세 제18조 조건부면세 사항에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를 포함

다음 방법은 석유정제 원료용 석유류를 동법 제18조의 조건부면세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현행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정제과정 원료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면세대상을 중유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제과정 원료로 사용되는 타 유종도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타 유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동법 제18조의 조건부면세에 1978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추가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제과정 원료도 이 조건부면세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조건부면세에 각종 산업, 용도 등에 따라 면세되는 유종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정제과정 원료의 중유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표 13〉 개별소비세 제18조 조건부면세 사항에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를 포함

구 분	현 행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및 1~9호 생략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① 및 1~9호 생략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석유화학공업용 또는 정제과정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V. 결 론

현행 개별소비세는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및 교통 혼잡 등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석유류에 대하여 피구세 내지 교정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동일한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별 차별과세를 일으키는 특정 산업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즉, 국내 현행 세법에서는 석유류를 연료용과 원료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조건부면세로서 일부 원료용 석유류를 면세하고 있다.

특히, 석유류 중 중유는 선박 및 기계류의 연료로 사용되지만, 원유와 같이 추가적인 석유정제 공정을 거쳐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의 다른 석유제품으로 생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유 관련 개별소비세율은 리터당 17원, 이에 부가세형태로 교육세는 리터당 2.55원(개별소비세의 15%)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조건부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수입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은 개별소비세 비과세혜택을 적용받는 반면, 수입중유로 정제공정을 통해 생산된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은 부과세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않아 경제적 실질이 같은 중유에 대해 차별 과세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별소비세의 제조업자, 공급업자, 장소 등의 경영자로서 납세의무자와 최종소비자인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의 성격이다. 그러나 정제용 중유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담세자가 해당 과세물품의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단계의 추가가공 사업자가 된다. 즉, 중유의 담세자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이 중유를 활용하여 추가가공을 하는 사업자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중유는 다양한 용도로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이면서 산업의 기초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모든 재화와 용역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의 성격인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개별소비세법 상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 과세하는 체계다. 그러나 중유는 다른 석유류와는 달리 수송용이나 난방용으로 소비되는 연료 소비성격과 함께 석유정제 또는 타 산업의 최종산물에 사용되는 원료용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타 석유류처럼 연료용으로 소비되는 성격이 아닌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세제취지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현행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조세중립성의 측면에서 수입재화와 국내 생산재화 간 과세형평성 그리고 산업간 과세형평성의 원칙을 저해시킨다. 수입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수입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이후 환급해 주는 형태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수입시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었다가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부분에 대해 환급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된 항공유 등은 부과세되며, 수입되었다고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부과하게 된다. 이에 반해, 중유로부터 정제되어 생산되는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부과세되지만 환급이 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 중유를 정제하여 항공유 등을 생산하여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부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제되기 전의 중유 상태에서 과세되었던 개별소비세가 환급되지 않아 결국 중유로부터 국내에서 정제되어 생산된 항공유 등은 부과세되었더라도 그 원가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포함되는 결과가 된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0항은 조건부 면세로서 석유류를 일부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석유류를 면세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는 조건부 면세가 적용된다. 이에 반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석유류를 원료용을 사용하는 석유정제 산업에 원료용으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해서는 과세되어 역차별 문제가 존재한다.

넷째, 타 산업 및 연료용 중유에 비해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중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 외부효과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중유의 배출량이 일반적으로 타 유류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석유정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이 타 산업이나 시설에 현격하게 적다. 특히 연료용 중유의 대기오염물질이 원료용에 비해 95% 이상이며 특히 미세먼지나 블랙카

본,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은 96%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환경오염 등의 외부불경제로 인한 교정과세로서 역할을 한다고는 볼 때, 석유정제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입 중유를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석유정제산업의 역차별성을 해결하여 중유 과세체계를 합리화시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승래 · 전병목. 2011. 녹색성장 전략과 수송부문 친환경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지용. 2009.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교통부문 에너지 세제평가.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태현. 2014.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김학수. 201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형건. 2018. 수송용 유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 운행거리 소비분위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 제17권 제1권 : 347-374.
- _____. 박용덕. 2008. “수송용 유류세 변동에 따른 소득분배 파급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용덕 · 마용선. 2007. “수송용 조세체계 현황과 적정개편 방향”. 에너지경제연구 제6권 제2호 : 257-287.
- 성명재. 2008. 개별소비세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Atkinson, A., and Stiglitz, J. E. 1976. The Design of Tax Structure : Direct and Indirect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1-2) : 55-75.
- Christiansen, V. 1984. Which Commodity Taxes should Supplement the Income Tax?. *Journal of Public Economic* 24(2) : 195-220.
- Cremer, H., Pestieau, P., Rocher, J-C. 2001. Direct versus Indirect Taxation : The Design of the Tax Structure Revisited.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2(3) : 781-800.
- Kaplow, L. 2006. On the Undesirability of Commodity Taxation even when Income Taxation is not Optima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0(6-7) : 1235-1250.
- Lee, C.-I. 2011. Commodity Taxation Welfare States, *Economic Inquiry* 49(1) : 194-211.
- Mirrlees, J. A. 1976. Optimal Tax Theory : A Synthe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 : 327-358.
- Saez, E. 2012. Income Inequality and Growth : The Role of Taxes and Transfers. OECD Economics Department Policy Note 9.
- <웹페이지>
-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서비스(<http://airemiss.nier.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European Commissio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excise-duties-alcohol-tobacco-energy/)
- EUR-LEX(<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3:283:0051:0070:EN:PDF>)
- OECD Database on Policy Instruments for the Environment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Heavy Oil

Kim, Kap-Soon* · Yoon, Sung-Man**

〈Abstract〉

Individual consumption tax(ICT) is levied on consumption of petroleum, which causes external effects such as discharge of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traffic congestion. However, the current IC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fuel and feedstock material use. Heavy oil is used as fuel for ships and machinery, but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produced by other petroleum products such as aviation oil, naphtha, and asphalt through additional petroleum refining processes like crude oi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an improvement plan by analyzing excise tax on heavy oil for OECD and EU countries and pointing out the current individual consumption tax problems. First, the current ICT for heavy oil is as follows.

First, the ICT burden on heavy oil for raw materials is the oil refining business, not the final consumer.

Second, taxation of ICT on heavy oil for raw materials, which is the basic fuel of the industry, can cause negative economic ripple effects due to inflation.

Third, from the viewpoint of tax neutrality, it can hinder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between imported oil and domestically produced oil and between industries.

Fourth, unlike the purpose of ICT, the heavy oil used in the petroleum refining process has a relatively low level of air pollutant emission compared to other oils or fuel heavy oil. It is lower than the emissions of publ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petroleum products industry and iron and steel industry, and the amount of heavy oil for raw materials is insignificant compared to heavy oil for fuel.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for the heavy oil for raw materials used in the petroleum refining process to be excluded from the ICT or included in the conditional duty-free range.

〈Key words〉 Heavy oil, individual consumption tax, for raw materials, external effect, tax equity

* Professor, Business School, Dongguk University-Seoul, kks@dongguk.edu,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sm6123@seoultech.ac.kr, Corresponding Author